

#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기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74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3일  
발 의 자: 김기덕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김규남, 김성준, 김인제,  
문성호, 박승진, 박철성,  
봉양순, 서준오, 성흠제,  
송경택, 송도호, 아이수루,  
왕정순, 유정희, 이소라,  
이영실, 이원형, 임규호,  
임만균, 정준호, 최기찬,  
한·신 의원(22명)

## 1. 제안이유

- 매년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관련해, 전년도 추진실적 및 문제점, 대책,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등 자료의 경우, 다양한 유관기관, 기타 교통안전 담당부서 등의 방대한 자료 등으로 실적자료 취합 및 활용 시의 어려움이 있음
- 이에 보다 용이한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, 관계기관 및 부서 등과의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을 통해, 실무자 등의 업무 추진 시 자료 수집 및 시간 단축, 기타 명확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 
(안 제9조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안전법」, 「도로교통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및 부서 등과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·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20px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9조(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및 부서 등과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

#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(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제3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이정수

추    계    분    석    관      김지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